

제 616 호
1977.7.29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
편 집 : 문화공보관 조 용 하
전 화 75-7834
인 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전 화 75-5444

시 보

차 례

◎ 조 비

제 1178 호 :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중
개정조례..... 3

◎ 고 시

제 240 호 : 도시계획시설 (하수도및도로) 결정및 지적승인..... 4

제 249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및 지적승인.....5

제 250 호 : 도시계획 (주차장) 사업 시행허가.....5

제 251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..... 7

제 252 호 :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.....8

제 253 호 :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구역내 도시계획시설
결정 및 지적승인..... 10

제 254 호 : 도시계획사업 (일단의 주택지조성) 시행자명
의 변경승인..... 12

제 255 호 : 도시계획시설 (운동장) 결정..... 12

이런 계속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1886

| | |
|---|----|
| 제 256 호 : 도시계획시설 (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) 지적승인 | 13 |
| 제 257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 | 13 |
| 제 258 호 : 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 변경지적승인 | 14 |
| 제 259 호 : 도시계획용도변경 지적승인 | 15 |

㉓ 공 고

| | |
|---|----|
| 제 177 호 : 유료도로통행료징수공고 | 15 |
| 제 178 호 : 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에정지 지정공고 .. | 16 |
| 제 179 호 : 직인 신조공고 | 17 |
| 제 35 호 (동대문구공고) :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 직인신조 공고 | 17 |
| 제 470 호 (도봉구공고) :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회계공무 원 직인 신조공고 | 18 |
| 제 248 호 (영등포구공고) : 공인신조 공고 | 19 |
| 제 407 호 (관악구공고) : 공인신조 공고 | 19 |
| 제 40 호 (강남구공고) : 공인신조 공고 | 20 |
| 제 21 호 (천호출장소공고) : 공인 사용승인 공고 | 21 |

조 **례**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시장 구자춘 ㉞

1977.7.29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178 호

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중 "도로법 제 66 조" 다음에 "도시계획법 제 65 조" 를 삽입한다.

제 2 조제 1 항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부과 당시의 토지시가가 공사 시행공고 당시의 토지시가에 자연상승치의 2 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하므로 받게되는 이익을 말한다.

제 10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1) 부담금 부과를 위한 토지가액조사 및 부과는 공사준공일로부터 1 년이내에 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부담금의 부과가 있을 후 타도로의 통종공사로 인하여 부과대상

이 될때(제 8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제외한다)

제 15 조중 "5 부" 를 "5 분" 으로 하고 단서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다만, 완납부중인 수익자가 당해토지를 처분한 때에는 부담금 잔액을 일시납부하여야 한다.

제 18 조(징수등) ① 부담금을 납기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 경과후 15 일 이내에 10 일간의 기한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

②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2)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(3)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에 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제 10 조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40호

도시계획시설(하수도 및 도로)결정 및 지적승인

- 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하수도 및 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던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전설

고시 제41호('77.3.16)의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7. 7. 21

서울특별시장

○ 하수도결정조서

| 구분 | 시설명 | 규모 | 연장 | 시점 | 종점 | 비고 |
|----|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|
| 신설 | 하수도 | B-3 | L=290m | 미아동 52-26 | 미아동 5-26 | |

○ 도로결정조서

| 구분 | 등급 | 류별 | 번호 | 폭원 | 연장 | 시점 | 종점 | 비고 |
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|
| 신설 | 소로 | 2 | | 8m | 290m | 미아동 52-26 | 미아동 5-26 | |

※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49 호
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(도로)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지적승인 하였던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41호('77.3.16)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

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7. 7.27

서울특별시장

○ 노 선 조 서

| 구분 | 등급 | 류별 | 번호 | 폭원 | 연 장 | 기 권 | 종 점 | 비 고 |
|----|----|----|---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기정 | 대로 | 3 | 21 | 25m | 1,300m | 한강교북단 | 원호로 4가 | 원황도로로 할 부속으로 변경 |
| 변경 | 중로 | 1 | 160 | 20m | . | . | . | |

※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50 호
 도시계획(주차장) 사업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149 호('77.5.12)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결정 및 지적승인된 금문도 특정가구 정비지구내 도시계획(주차장)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건설부고시 제41호('77.3.16)의 권한 위임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하였던 이를 고시한다.

1977. 7. .

서울특별시장

시행허가 내용

1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-10일대

2. 사업의종류및명칭 : 금문도특정가구 정비지구내 주차장 시설 사업

3. 면적 또는 규모
 대지면적 : 790.5평
 건물규모 : 지하 5층 이상

4. 시행자의 설명 주소
 국제관광공사 사장 김 화 점
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8외 1

| 5. 사업의 착수 준공예정 년월일 착수년월일 : 77.10 준공예정일 : 79.2 | | | | 6. 위치도및 계획영 면도 : 별첨 (생략) 7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 물의 명세 : 다음 | |
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|--------------|
|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주소 | | | | | |
| 가. 토 지 | | | | | |
| 소재지 | 지번 | 지목 | 면적 | 주소, 성명 | 소유권이외의 권리 |
| 중구 소공동 | 89-10 | 대지 | 729.8평 | 중구 관훈동 198-1 국제관광공사 | |
| " | 89 | " | 44 | 중구 소공동 89 고려인삼공업주식회사 | |
| " | 89-1 | " | 7 | 중구 구교동 233 김성곤 | |
| " | 89-2 | " | 2.4 | 중구 소공동 89-1 백영복 | |
| " | 89-3 | " | 7.3 | 중구 소공동 89-2 이웅순, 김원곤 | |
| 나. 건 물 | | | | | |
| 소재지 | 용도 | 구조 | 면적 | 소유자 |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|
| 소공동 87-10 | 전포 | 철근콘크리트 영유 | 1,725.14 | 중구 관훈동 198-1 국제관광공사 | |
| 소공동 89 | 전포 및 사무실 | " | 142.73 | 중구 소공동 89 고려인삼공업주식회사 | |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251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05 호 (77.4.14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을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(77.3.26)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친호출장소 도시경비과와 서울특별시 학교법인 보인학원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7. 7. 27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지 : 강남구거여동산 23-14

의 15 필

2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
명칭 : 보인중상업고등학교 이전부지 조성 및 교사신축
3.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: 8,100 평
4. 사업시행자주소 : 종로구내수동 145 학교법인 보인학원 이사장
성명 : 이 경 숙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가. 착수년월일 : 77. 7. 20
나. 준공예정년월일 : 78. 2. 20
6. 허가번호 : 서울특별시고시제 251호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외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시 : 별첨
8. 토지 또는 건물외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24 조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별첨
9. 위치도 : 도면선략. 끝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

| 소재지 | 지 번 | 지 목 | 농부면적 | 수용 또는 사용할면적 | 권리자의성명 | 권리자의주소 |
|-----|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거 여 | 86 | 답 | 167 평 | 10 평 | 문교화외 4인 | 거여2 |
| " | 81-1 | " | 257 평 | 60 평 | 이 형 식 | 한남 72-20 |
| " | 81-2 | 채방 | 16 평 | 4 평 | 김 용 회 | 오금 535 |
| " | 79-1 | " | 12 평 | 12 평 | 김철진외 3인 | 길음 1180-4 |
| " | 79-2 | 전 | 60 평 | 60 평 | " | " |

| 소재지 | 지 번 | 지목 | 공부면적 | 수용 또는 사용할면적 | 권리자의성명 | 권리자의주소 |
|-----|--------|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거 여 | 76-1 | 대 | 251 평 | 251 평 | 김철진의 3인 | 길음 1180-4 |
| " | 76-2 | 전 | 103 평 | 103 평 | 홍 성 재 | 오금 541 |
| " | 76-3 | 대 | 199 평 | 170 평 | 김철진의 3인 | 길음 1180-4 |
| " | 산23-4 | 임 | 1,230 평 | 1,230 평 | 권 인 섭 | 명분 1가 5-33 |
| " | 산23-6 | " | 8,340 평 | 2,670 평 | 권병규의 1인 | 성북 1가 108 |
| " | 산23-3 | " | 690 평 | 630 평 | 권 인 섭 | 명분 1가 5-33 |
| " | 산23-15 | " | 1,350 평 | | 하 석 근 | 성북 131-53 |
| " | 산23-14 | " | 3,990 평 | | " | " |
| " | 109-2 | 대지 | 342 평 | 2,710 평 | " | " |
| " | 84-1 | 구거 | 741 평 | 70 평 | 서울특별시 | |
| " | 78-1 | 도로 | 176 평 | 120 평 | " | |
| 합 계 | | | | 8,100 평 | | |

○서울특별시고시제 252 호

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8 호 (77.6.8) 로 결정 및 지적승인 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같은 법 제 25 조 규정 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에 의거 다음과

같이 시행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 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과와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 출장소에 각각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.

1977. 7.27

서울특별시장

| | |
|--|---|
| <p>1. 사업시행지 : 경기도시흥군서면 광명리 241 의 27 필</p> <p>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광명리 주택단지</p> <p>3. 사업시행자 성명, 주소 : 최승권 경기도시흥군서면광명리 287-10</p> <p>4. 사업시행면적 : 68,944 평방미터</p> | <p>(20,855.5 평)</p> <p>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. 착수년월일 : 1977. 7 나. 준공예정일 : 1978. 5.31</p> <p>6.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지적 소유권명세 : 별첨 별첨 : 도면생략</p> |
| <p>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지적, 소유권 명세</p> | |

| 소 재 지 | 지 번 | 지 목 | 지 적 | 소 유 권 |
|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흥군서면광명리 | 241 | 답 | 1,026 평 | 영등포구신길동 257 의 4 박두화 |
| " | 242 | " | 796 평 | 경기도고양군송도면덕이리 230의2 임진택 |
| " | 243 | " | 388 평 | " |
| " | 244 | " | 1,416 평 | 경기도시흥군서면광명리 광명아파트 1동 102호 황선봉 |
| " | 246-2 | " | 717 평 | 동대문구제기동 1077 이정선 |
| " | 247 | 잡 | 1,293 평 | 경기도시흥군서면철산리 472의69 김준옥 |
| " | 352-1 | 답 | 42.9 평 | 경기도고양군송도면덕이리 230의2 임진택 |
| " | 352-2 | " | 744 평 중 484 평 | " |
| " | 352-3 | " | 889 평 중 352 평 | " |
| " | 352-4 | " | 706 평 중 584 평 | " |
| " | 353-1 | " | 298 평 | " |
| " | 353-2 | " | 648 평 | " |
| " | 354 | " | 1,094 평 | 영등포구여의도동 1-111 민대식 |
| " | 355 | " | 1,035 평 | 경기도시흥군서면광명리 287-10 송윤석 |
| " | 356 | " | 548 평 | 영등포구화곡동 379 의 56 |

| 소재지 | 지번 | 지목 | 지적 | 소유권 |
|-----------|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흥군서면 광명리 | 357 | 답 | 770평중 593평 | 종로구청운동 108 외 9 박영준 |
| " | 362 | " | 770평중 27평 | " " |
| " | 363 | " | 6,014평중 207.2평 | " " |
| " | 364 | " | 1,527평중 331.2평 | 경기도시흥군서면광명리 575 홍찬욱 |
| " | 365-1 | " | 882평 | 경기도고양군송도면덕이리 230외2 임진택 |
| " | 365-2 | " | 796평중 203평 | 서대문구아현동 1 외 75 강석규 |
| " | 365-4 | " | 1,888평중 602평 | 경기도고양군송도면덕이리 230외2 임진택 |
| " | 366 | " | 1,131평 | " " |
| " | 367 | " | 1,148평 | 영등포구화곡동 379외 56 양부덕 |
| " | 368 | " | 470평중 393평 | 성북구성북동 116 강영원 |
| " | 369-2 | " | 1,516평 | 서대문구연희동 138 조구성 |
| " | 370-2 | " | 631평 | 성북구성북동 81-3 이정선 |
| | | 도 | 815평 | |
| | | 구거 | 363.2평 | |
| 계 | | | 20,855.5평 | |

○ 서울특별시고시 제 253 호

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구역내
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78 호

(77.6.8)로 결정 및 지적승인
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
구역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
시계획시설 (도로, 공원, 쓰레기처리
장) 결정과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
제 12조 및 같은 법 제 13조

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1 호 (77.3.10)
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
도시계획과와 경기도시흥군서면광명리
출장소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
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7. 7.27

서울특별시장

| 가. 도로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|
| 구분 | 등급 | 유별 | 번호 | 폭원 | 연장 | 기 | | 종 | |
| 신설 | 소로 | 2 | 1 | 8 | 130 | 광명리 | 359 외 2 | 광명리 | 243 |
| " | " | " | 2 | 8 | 176 | " | 243 | " | 363 |
| " | " | " | 3 | 8 | 38 | " | 359 외 2 | " | 248 |
| " | " | " | 1 | 6 | 302 | " | 351 외 4 | " | 358 외 1 |
| " | " | " | 2 | 6 | 220 | " | 385 외 1 | " | 357 |
| " | " | " | 3 | 6 | 124 | " | 244 | " | 355 |
| " | " | " | 4 | 6 | 199 | " | 242 | " | 355 외 4 |
| " | " | " | 5 | 6 | 224 | " | 352 외 3 | " | 385 외 1 |
| " | " | " | 6 | 6 | 72 | " | 351 외 4 | " | 371 외 2 |
| " | " | " | 7 | 6 | 30 | " | 360 | " | 242 |

| 나. 공원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|
| 구분 | 종 류 | 공 원 명 | 위 | 치 | 면 적 (㎡) | 비 고 |
| 신 설 | 아 동공원 | 광 명 리 단 지 제 1 공 원 | 광 명 리 | 367 부근 | 2,200 | |
| " | " | " 제 2 공 원 | " | 241 " | 1,247 | |
| " | " | | | | 3,447 | |

| 다. 쓰레기처리장 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
| 구 분 | 시 설 명 | 위 | | 치 | 면 적 | 비 고 |
| 신 설 | 쓰레기처리장 | 경기도 | 시흥군 | 서면 광명리 357 부근 | 2,068 ㎡ | |

별첨도면생략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54호

도시계획사업(일단의주택지 조성)시행자명의변경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284호(77.10.30)로 허가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자의 명의를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에 의한 건설부고시 제 41호(77.3.16)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양서출장소 도시정비과와 서울특별시 시민과에 각각 비치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7. 7. 27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지 : 영등포구 등촌동산 84-4외 6

2. 사업의 종류 및 :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

명칭 : 선교사 주택단지

3. 시행면적 : 10,210

4. 시행자 주소·성명

가. 구시행자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5

동양선교 장학회 대표 조종남

나. 신시행자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등촌동산 77-10.

재단법인 한국세계기독교선명회 대표 한 경 직

5. 사업시행기간 : 1976.10.30-77.12.20

6. 승인조건 : (생략) 끝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55호

도시계획시설(운동장)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와 건설부고시 제 41호(77.3.16)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악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7. 7. 28

서울특별시장

| 가. 운동장결정조서 | | | | |
|--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구분 | 시설명 | 위치 | 면적 | 비고 |
| 신설 | 운동장 (정구장) | 관악구 신림동 10-5 외 31 필지 | 9,506㎡ (2,876명) | |
| 별첨도면생략. | | | | |
| 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256호 도시계획시설(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)지적승인</p> <p>1. 영등포구청 도시계획시설(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)은 다음과 같이 지 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와 건설부 고시제 41호(77.3.16)</p> | | <p>규정 및 77.5.1자 서울특별시 내 부 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 니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7. 7. 26 서울특별시장</p> | | |
| 가. 도시계획시설(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)지적승인 조서 | | | | |
| 구분 | 단체명 | 위치 | 면적 | 비고 |
| 신설 | 철거민정착단지 | 영등포구 시흥동 산 136 외 2 | 24,693 (7,470명) | 임야 2정 4무 9보. |
| 별첨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 | | | | |
| 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257호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</p> <p>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44호(77.5 11)로 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사업(학교)에 대하여 도시 계획법 제 24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(77. 3. 16)규정에 의거 다음과</p> | | <p>같이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 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7. 7. 서울특별시장</p> | | |

| | |
|---|---|
| <p>가. 사업시행지 : 서대문구 홍은동 산 26 회 126 와 11 필지</p> <p>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 업 (학교) 명지 중 · 고등학교 체육장 부지 조성</p> <p>다. 사업시행면적 : 5,190 평</p> | <p>라.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</p> <p>○ 착공년월일 : 허가일로부터 1주일 이내</p> <p>○ 준공예정년월일 : 77. 9.30</p> <p>마.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: 지번 · 지 목 · 지적 소유권 권리명세</p> |
|---|---|

| 번호 | 소재지 | 지 번 | 지 목 | 지 적 | 소 유 권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|
| 1 | 서대문구 홍은동 | 산 26 - 126 | 입 야 | 2,950 평 | 명 지 학 원 |
| 2 | " | " 26 - 74 | " | 211 " | " |
| 3 | " | " 26 - 73 | " | 320 " | " |
| 4 | " | " 26 - 72 | " | 310 " | " |
| 5 | " | " 26 - 90 | " | 220 " | " |
| 6 | " | " 26 - 2 | " | 285 " | " |
| 7 | " | " 26 - 4 | " | 620 " | " |
| 8 | " | " 26 - 120 | " | 72 " | " |
| 9 | " | " 323 - 14 | 대 | 95 " | " |
| 10 | " | " 323 - 15 | " | 30 " | " |
| 11 | " | " 323 - 16 | " | 37 " | " |
| 12 | " | " 323 - 17 | " | 40 " | " |
| | 계 | 12 필지 | | 5,190 평 | |

| | |
|--|---|
| <p>㉞ 서울특별시고시제 258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 변경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고시 제 236호 (77.7.21)로 결정 고시된 당시 관내 성동구 구의동 59-36 외 4 필지에 대하여 도</p> | <p>시계획시설 (주차장)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적 승인하였기</p> <p>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(77.3.16)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</p> |
|--|---|

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 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○ 주차장 지적 승인조서</p> | | <p>있습니다. 1977. 7. 29 서울특별시장</p> | |
| 구분 | 위 치 | 면 적 | 비 고 |
| 신설 | 성동구 구의동 59 - 36외 4 필지 | 3,666(1,110명) | 동부운수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 |
| <p>○ 서울특별시고시제 259 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지적승인 1. 건설부 고시 제 37 호 ('76.3.27) 일부 변경 결정 고시된 용도지역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승 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 설부 고시 제 41 호 ('77.3.16) 에 가.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적 승인 조서</p> | | <p>외거 고시한다. 2. 관계도서는,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과와 관한구청 도시정 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1977. 7. 30 서울특별시장</p> | |
| 변 경 구 분 | 위 치 | 면 적(㎡) | 비 고 |
| 주거-자연녹지 | 중량천변 | 2,274,500 | (도면생략) |
| <p>공 고 ○ 서울특별시공고제 177 호 유로도로통행로징수공고 서울특별시 관내에 유로도로를 주</p> | | <p>가 신설하여 통행로를 징수함을 유로 도로법제 10조및 동법 시행령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 1977. 7. 27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</p> | |

| | |
|---|---|
| <p>1. 통행료의 징수자 서울특별시 2. 유료도로의 구간 영등포구 독산동 - 영등포구 신월동</p> | <p>3. 통행료의 징수기간 77.8.16 - 97.12.31 4. 통행료 징수 대상과 그 금액</p> |
| <p>대 상</p> <p>2, 3륜차 승용차, 버스, 화물차 특수차 (10톤이상화물차 포함)</p> | <p>금 액</p> <p>50 원 100 원 200 원</p> |
| <p>5. 통행료의 면제 받는 차량</p> <p>가. 군용 및 국작전용 차량</p> <p>나. 구급 및 구호 또는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</p> <p>다. 교통신속차량</p> <p>라. 수방기관에서 수방을 위한 출동에 종사하는 차량</p> <p>마. 체신관에서 우편 및 공중전기 통신업무에 사용하는 차량</p> <p>바. 대통령, 국무총리, 국회의장, 대법원장 및 국민으로서 외국사절과 그 경호용 차량</p> <p>사. 검찰, 경찰, 기타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용 차량</p> <p>6. 통행료의 징수 방법</p> <p>현금 또는 회수권으로 요금소에서 징수</p> | <p>○ 서울특별시 공고 제 178 호</p> <p>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에정지 지정공고</p> <p>1. 서울특별시 공고 제 111호 및 제 156호 (77.5.26, 77.7.9)로 환지계획 변경 공람공고한 영등계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에 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5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 변경 인가 하고 동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를 변경 지정 하였습니다.</p> <p>2. 환지에정지 변경도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및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/p> |

3. 본 공고사항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될 것이나, 미수명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1977. 7.

서울특별시

<환지예정지변경지정내역>

- 가. 사업명 : 영동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
- 나. 변경사유 : 강남구반포동 413외 1호 외 44필지
- 다. 변경면적 : 17,733.6 평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79 호

직인신조공고

서울특별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의 직인을 신조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함.

1977. 7. 29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승

- 1. 공인명 : 서울특별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출납명령관 인
- 2. 공인사용일자 : 77. 8. 1 부터

3. 공인의 도형



◎동대문구공고제 35 호

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관계공무원직인신조공고

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시행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신조하였기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함.

1977. 7. 27

동대문구청장 황 중 현

아 래

- 1. 공인명 :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동대문출납명령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동대문출납공무원
- 2. 식자 및 규격 : 한글전사체 정방형 2.1cm . 1.8cm
- 3. 사용개시일 : 1977. 8. 1

09:00

공 인 과 인 영

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동대문구출납명령관인

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동대문구출납공무원인



◎도 봉 구 공 고 제 470 호

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
회계장 공무원직인신조공고

- 1.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시행에
따라 회계직 관계공무원의 직
인을 신조하여 사용함을 공고함.

가. 사용일시 : 1977.8.1

- 나. 직인명 : 1)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
도봉구출납명령관인
2)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
도봉구출납공무원인

다. 신조직안의 인영

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도봉구출납명령관인



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도봉구출납공무원인







1977. 7. 28

도 봉 구 청 장 한 백 인

| | |
|---|--|
| <p>◎ 영등포구 공고제 248 호</p> <p>공인신조공고</p> <p>1. 77.7.6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관 제공무원 적인을 신조하였기 서울 특별시 공인조례 제6조·9조· 1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함. 가. 신조공인사용개시일 : 77.8.1 09:00</p> | <p>나. 신조공인명 : 1) 의료보호기금특별 회계영등포구출납명령관인 2) 의료보호기금특별 회계영등포구출납공무원인</p> <p>1977.7.27</p> <p>영등포구청장 김택수</p> |
| <p>인명부 (공인배장)</p> | |

| | | | |
|--|---|--|---|
| <p>날인년월일 공인명</p> | <p>1977년 8월 1일 신조개자</p> | <p>날인년월일 공인명</p> | <p>1977년 8월 1일 신조개자</p> |
| <p>의료보호기 금특별회계 영등포구출납 명령관인</p> |  | <p>의료보호기 금특별회계 영등포구출 납공무원인</p> |  |

| | |
|---|---|
| <p>◎ 관악구 공고제 407 호</p> <p>공인신조공고</p> <p>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시행에 따른 관악구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개 울특별시 공인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신조 사용하기에 서울특별시</p> | <p>공인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</p> <p>1. 공인신조사용개시일시 : 77.8.1 09:00</p> <p>2. 신조공인명 가.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관악구 출납명령관인</p> |
|---|---|

| | |
|---|---|
| <p>나.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관악구 출납공무원인</p> <p>3. 공인의 인영</p> | <p>1977. 7. 29</p> <p>관 악 구 청 장</p> |
| <p>공 인 의 인 영</p> | |
| <p>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관악구출납명령관인</p>  | <p>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관악구출납공무원인</p>  |
| <p>◎ 강남구 공고 제 40 호</p> <p>공인신조공고</p> <p>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시행에 따른 회계직 관계공무원의 직인용 서울 특별시공인조례 제6조 규정에 의</p> | <p>거 신조하였거 동조례 제9조에 의 거 이를 공고한다.</p> <p>1977. 7. 27</p> <p>강 남 구 청 장</p> <p>1. 공인사용년월일 : 77.8.1 09:00 2. 공인인영</p> |
| <p>공 인 의 인 영</p> | |
| <p>의료보호특별회계강남구출납명령관인</p>  | <p>의료보호특별회계강남구출납공무원인</p>  |

◎친호출장소공고제 21 호

증인사용승인공고

서울특별시공인을 아래와 같이 사
용승인하였거 서울특별시 증인조례
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.

1977. 7.

친 호 출 장 소 장

- 1. 사용승인일자 : 1977.8.1
- 2. 공인회 인명

공 인 회 인 명

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친호출장소출납명령권인

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친호출장소출납공무원인

